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간강사 인력풀 운영 안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I 인력풀 등록 주요내용

- 등록 대상: 시흥 공립 유·초·중·고·각종학교 시간강사 인력풀 등재 희망자
-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실기교과 교원자격증 제외)
- 등재 나이: 등록일 기준 62세 이내
 - ※ 단, 2026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한시적 완화 기준에 따라 2026 한시적 적용자(63세부터 70세까지는 2026년 12월까지 등재 가능)
- 등록 제한
 - 등록일 기준 임용 상한연령 초과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자
 -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 (단, 성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가능)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 채용 비리·성 비위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자
 - 기타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 서류 위변조, 허위 작성 등)

○ 등록 방법

- 기간: 상시
-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dusgmdzb@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본인 자필 서명 후 PDF 또는 스캔본으로 제출

II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수량	비고
1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필수	1부	[서식1]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1부	[서식2] 제출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필수	1부	[서식3] 제출
4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1부	[서식4] 제출 (특수학교·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 센터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인력에 해당자 제출)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필수	1부	[서식5] 제출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1부	[서식6] 제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1부	[서식7] 제출
8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필수	1부	[서식8] 제출
9	교원자격증	필수	사본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필수	사본 1부	
11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필수	사본 1부	
1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필수	사본 1부	유효기간 1년 이내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	필수	사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최근 2년 이내 제출 -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제출
14	퇴직증명원	해당자	사본 1부	- 명예·정년퇴직 교원 등 해당자 제출
15	경력증명서	해당자	사본 각 1부	- 인력풀 신청서에 기재한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제출

III

인력풀 운영 관리

○ 등록 유효기간

- 인력풀 등록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
- 인력풀 등재 연도별 등재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연도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2026년	등재 시점 ~ 2028.12.31.
2027년	등재 시점 ~ 2029.12.31.
2028년	등재 시점 ~ 2030.12.31.

※ 단, 인력풀 등재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상한연령 초과자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제교원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인력풀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력풀 명단에서 즉시 삭제 처리

○ 제출서류 관리

-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인력풀 등재자를 채용한 학교에서 자료 요청 시 학교로 [제출서류 9~13] 서류를 송부(단, 계약 체결 시 교원자격증 원본은 해당교에서 직접 확인)
- 기타 사유 또는 인력풀 등록 유효기간 내에 제출서류 반환 또는 삭제(파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등록 기간 중 등재자가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 임용 상한연령 기준에 초과하는 경우, 시간강사 채용 결격사유 및 등록삭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자 본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인력풀 명단 삭제 및 자료 파기
- 시간강사 인력풀 운영 관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등재자 본인이 자료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 인력풀 등재 자동 삭제 처리
- 인력풀 등재자가 채용 사항 변경 시 구글폼으로 갱신하며, 인적 사항 변경 시 [서식9]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또는 교육부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침에 따름

○ 시간강사 인력풀 활용

- (교육지원청→학교) 인력풀 등록자 명단 제공 (상·하반기)
단, 개별학교 요청 시 상시 제공
- (학교→인력풀 등록자) 개별 연락 후 채용 절차를 거쳐 학교에서 계약

※ 학교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등록 시 제출한 서류 외에 기타 추가 서류를 징구할 수 있음

IV

기타 유의사항

- 시간강사 인력풀은 학교의 시간강사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취업 편의를 제공할 뿐, 시간강사 인력풀에 등재되어도 학교의 결원 상황에 따라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풀을 통해 시간강사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인력풀에 등재되는 모든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등재자 본인의 귀책 사유임

- [서식 1]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서식 4]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서식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서식 6]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8]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 [서식 9] 시간강사 자체 인력풀 (정정/삭제) 신청서
- [서식 10]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요령>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기재
 -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 초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
 - 중등 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 특수 자격증 소지자 →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 「기타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 연락처는 긴급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작성하고, 주소는 현재 거주지 표기할 것

3. 학력사항

- 최종학력 : 지원자의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 교원자격증 :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 중등학교 및 비교수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에 기재

4. 교육경력

- 시간강사, 기간제교원 등 교육경력이 있을 때 최근 근무처 3개 기관이내 기재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근무희망 지역 : 시흥시 행정동 단위로 기재(복수 선택 가능)
 - ※ 예) 정왕동, 대야동, 은행동

[서식 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본문, 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_____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본인)'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동의자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시간강사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제10조의4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아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및 결격사유 조회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제10조의4에 따른 시간강사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 폐기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시간강사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작성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 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 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번	문항	해당여부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1번 문항 '해당' 체크 시 2~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2~4번 생략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2번 문항 '해당' 체크 시 3~4번 진행, '미해당' 체크 시 3~4번 생략		
3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1, 2, 3-1. 3-2.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이다.	해당 <input type="checkbox"/> /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 1, 2, 4-1, 4-2, 4-3 모두 해당 시,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서식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일련번호 ※미기재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